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7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강준현

김병욱 · 김정호 · 박상혁

소병훈 · 위성곤 · 이수진

전혜숙 • 진선미 • 최혜영

허 영·홍성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규율 대상에 빠져있어 보안관리 적용의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이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거나 넘겨받은 자는 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 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 사의 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범위, 사전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 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 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생략)

<신 설>

개 정 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이들로부 터 해당 정보를 받거나 넘겨받 은 자는 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 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부동산 취득의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사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

적 범위, 사전 신고 대상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만원-----. ② -----<u>7년</u>-----<u>7</u>천만원 -----. -----③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부동 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

는 추징한다.

<신 설>

<신 설>